

## 산업보건 단신

# 산업체의 유해물질에 대한 주민들의 알 권리

신동천

지난 1986년 10월 17일 미국에서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산업체에 대한 긴급계획 및 주민들의 알 권리에 관한 법 (the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유해산업장의 안전관리와 환경보전을 위하여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 하였는데 그 이유는 주민들이 유해물질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갖게되면 기업체는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갖추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법에서는 유해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모든 산업체가 그 유해물질의 관리상태와 환경내로의 배출상태를 상세히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고 안전사고에 의한 대량배출을 즉각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정보가 주민들 뿐 아니라 유해물질 관리기준을 설정하는 정부기관에도 매우 유용하게 될 것이라 하였고 이 법에 의하여 결국은 산업장의 유해물질에 의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유해물질의 대체물질을 개발 촉진하거나 유해폐기물을 제거하는 기술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법안은 일명 “Title III”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먼저 유해물질 누출사고시 긴급계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주정부의 책임자가 늦어도 1987년 4월 17일까지 “긴급대응위원회 (emergency response commission)”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주정부의 긴급대응위원회는 동년 9월 17일까지 “지방긴급계획위원회 (local emergency planning committee)”를 각 지역에 설치토록 되어 있다. 이 두 위원회의 위원은 보건의료계, 환경 및 자원관리분야, 경찰, 소방서, 공무원, 주민을 포함하는 여러분야의 관련인사나 전문가로 선출하게 된다.

지방긴급계획위원회에서는 해당 지역내에 있는 모든 산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물질 관리상태를 파악하고 긴급사고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산업체에서는 만약 긴급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화나 라디오를 통하여나 혹은 직접 그 사고발생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사항으로는 일차적으로 화학물질의 종류, 유해정도, 누출량, 누출시각과 기간, 누출경로, 예상되는 인체피해, 주민들의 주의사항등이며 사후에 이차보고에서 실제 취해진 조치내용과 주민의 건강피해정도 그리고 유해물질에 노출된 주민들에 대한 의료검사 및 추구관리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유해물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 적용되는 주민들의 알권리에 대한 보고의무는 우선 제조업자가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물질의 material safety data sheets (MSDS)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 목록을 지방긴급계획위원회와 주정부 긴급대응위원회 그리고 지방소방서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내용으로는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각 유해화학물질의 전년도 최대 사용량과 일일사용량, 그리고, 유해물질의 사용 및 보관장소와 방법등이다.

또한 10명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산업체나 1년에 10,000파운드 이상의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업체는 환경보호청에 그 사용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하여야 할 유해물질의 선정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르게 된다. 첫째, 그 물질이 암이나 심각한 태아기형이나 신경손상 혹은 유전적변이를 일으키기 않는가? 둘째, 그 물질이 반복적으로 장기간 유출됨으로써 인체에 금성 혹은 만성적으로 건강장애를 유발하지 않는가? 셋째, 그 물질이 자체독성, 잔류성, 혹은 생태계농축을 통하여 환경에 피해를 야기시키지 않는가?를 검토하여 결정하게 된다.